

“당신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 어디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인지 판단합니다.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 가족 범위

-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③ 형제자매(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